

3532
454.0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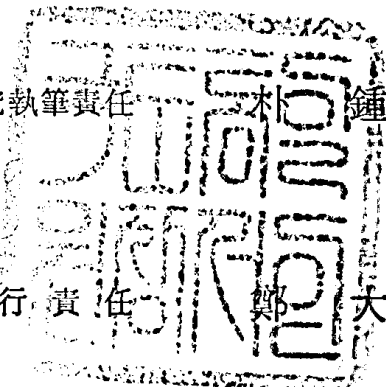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研究

北傀의 海洋法政策에 關한 研究

研究執筆責任

刊行責任



聲 (檀國大學校)

圭 (政策企劃室 補佐官)

북傀 해양법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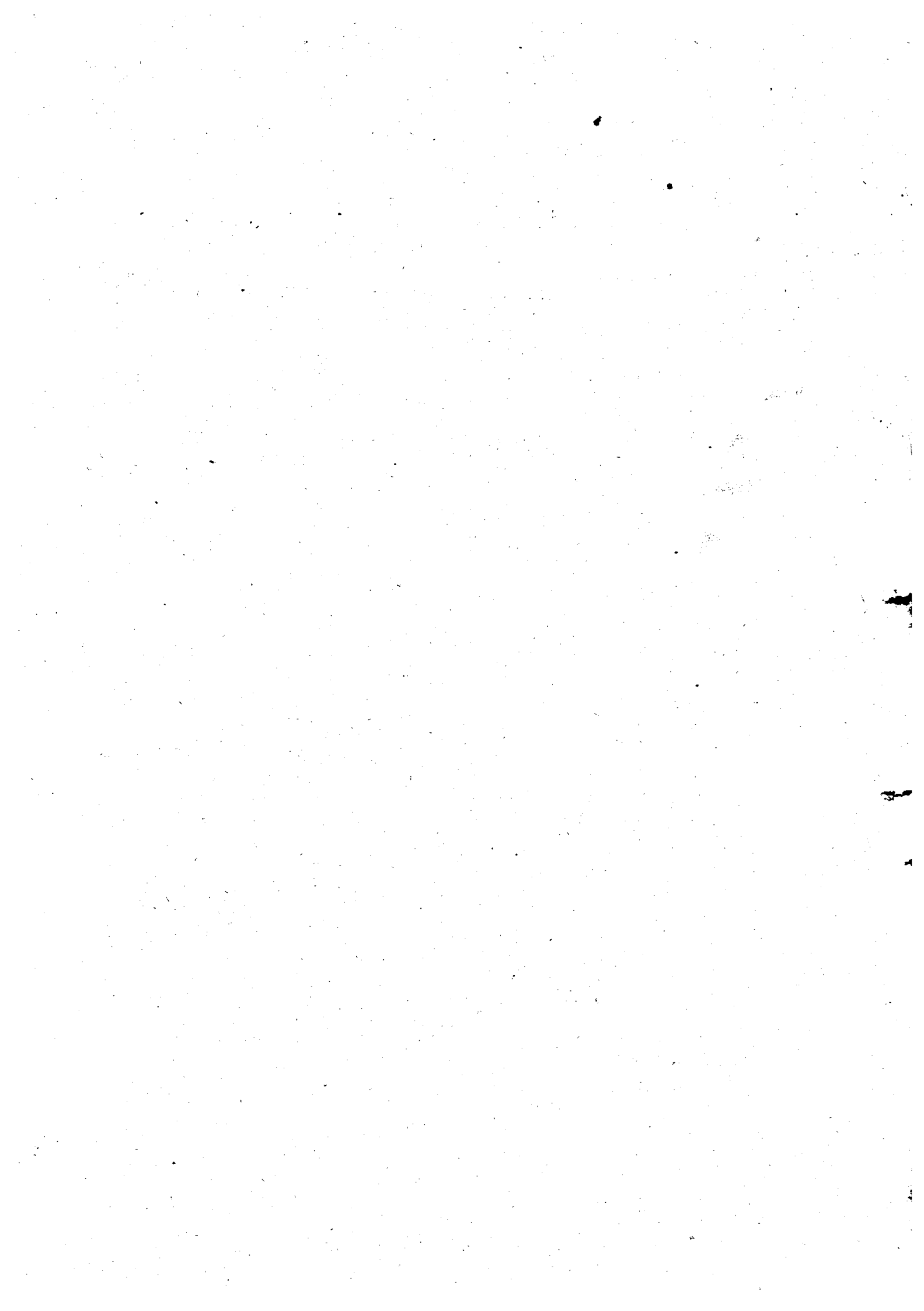
" 2021년 5월 27일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I. 序 論	3
II. 北韓海洋法政策의 基本立場	5
III. 北韓의 領海	12
IV. 北韓의 經濟水域과 大陸棚	15
V. 軍事警戒線	24
VI. 結 論	36



I. 序 論

北韓海洋法政策은 比較的 짧은 歷史를 가지고 있다. 北韓은 第 1, 2 次 GENEVA 海洋法會議에 參加하지 못하였다. 第 3 次 海洋法會議에는 參加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海洋法會議의 基本精神⁽¹⁾이 1970 年 UN 總會 決議 2749 号에 明示된 海洋의 共同遺産稅, UN 憲章의 理念인 海洋法을 통한 國際的 平和와 安全의 維持, 國際法의 原則에 따른 友好 및 協力關係의 增進 및 海洋慣習法과 傳統의 尊重등의 基本理念을 誠實하게 履行할 基本姿勢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는 反對로 海洋秩序를 통한 國際的 平和와 安全維持에 대한 公憤은 고사하고 北韓은 海洋法 또는 海洋法會議를 美國, 大韓民國, 日本을 政治的으로 比방하는 目的으로 利用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全共產主義國家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惡意的 行爲를 北韓은 恣行하고 있다.

北韓의 海洋法에 대한 立場은 前述한 바와 같이 海洋法을 不當하게 政治的으로 利用하고 있다. 北韓은 海洋法規, 慣習法, 海洋法史, 海洋法理論에 대한 基本的 研究가 不實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海洋法規의 重要한 用語, 즉 主權, 主權的 權利, 排他的 權利, 管轄權을 分別하지 못한다고 制限要件도 考慮하지 않고 無條件 自

主權 만을 主張하고 있다. 이것은 權利의 濫用보다는 海洋法秩序에 대한 無智로 본다. 北韓은 原則적으로 蘇聯, 中共, 77 Group의 立場을 追從하고 있으나 實際的 行動은 그들의 意思와 逆行하고 있다. 또 領海, 大陸棚, 經濟水域을 分別하지 않고 이것들은 소위 北傀軍事警戒線 宣言으로 包括적으로 規制하고 있다. 北韓은 이러한 不条理, 非合理性을 合理化하는 方法으로 一方的 宣言說을 唯一한 基本政策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러한 北韓現象을 염두에 두고 이 報告는 筆者의 便宜上 다음과 같은 順序로 論한다. 第2章에서는 北韓海洋法 政策의 基本立場을 추리하였다. 第3章에서는 北韓의 領海, 第4章은 經濟水域 및 大陸棚, 第5章에서는 소위 北傀 軍事警戒線을 分析하였다.

北韓 海洋法政策을 論함에 있어 資料의 貧困으로 具體的이며 個別的으로 깊이있게 파고들지 못하였다. 특히 北韓의 海洋法, 國際法의 著書나 論文을 參考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의 存在 与否조차 모르는 實情에 諒知있기 바란다.

II. 北韓海洋法政策의 基本立場

最近 北韓의 海洋法에 關한 宣言 및 聲明을 보면 海洋法の 基本理念에 立脚한 一貫性있는 政策은 찾아 볼 수 없다. 大韓民國의 海洋法政策은 海洋秩序의 統一的體系의 樹立, 航海의 自由, 海洋資源의 保存, 海運의 發展등 海洋의 平和的 使用을 基本指標⁽²⁾로 考慮하고 있는데 北韓은 大조적으로 平和的使用에 對한 危脅, 自由友邦을 非難하는 目的으로 海洋法을 利用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소위 軍事警戒線을 통한 一方的 措置만을 恣行하고 있다. 北韓의 海洋法政策을 政治的 利用, 一方的 宣言, 軍事的 使用으로 考慮하고 論하기로 한다.

1976年 Kuala Lumpur⁽³⁾에서 開催된 亞阿法律諮問委員會 海洋法會議에서 北韓代表는 오늘날 新生獨立國, 開發途上國들이 當面한 緊急한 課業은 帝國主義國家들의 利益을 爲하여 樹立된 낡은 制度를 進步的 國家의 意思에 따라 새로운 海洋法으로 代置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帝國主義國家의 抑壓, 착취政策은 退廢되고 新生獨立國들이 世界舞臺에 登場하는 새로운 紀元이라고 말하고 있다. ⁽⁴⁾

北韓代表는 傳統的 海洋法の 原則을 具體적으로 非難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위 새로운 海洋法の 代案도 提案하지 못하고 있다.

北韓이 말하는 새로운 法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理解할 수 없다. 더구나 그러한 새로운 法이 現 國際社会에 存在하는지 심히 疑心스럽다.

北韓代表는 亞阿法律諮問委員會 海洋法 小委員會에서 金日成을 찬양하는 發言을 서슴치 않고 말하고 있다. (5) 즉 北傀 金日成은 帝國主義 약탈자에 대한 第3 世界の 鬪爭을 支持한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國際經濟體制를 樹立하여야 한다고 (6) 海洋法과는 전혀 關係가 없는 엉뚱한 政治的 發言을 서슴치 않고 한다.

帝國主義 약탈자들은 經濟的 難局을 解決하는 方法으로 新生獨立國을 擄取하고 開發途上國의 海底資源을 약탈하는 새로운 植民主義를 造成하고 있다고 非難한다. (7) 帝國主義의 海洋機械文明은 아시아, 아프리카, 南美 諸國 經濟發展에 큰 障礙가 되며 政治的 獨立마저 威脅하고 있다고 力說하고 있다. (8)

海洋法은 國家主權과 直結된 問題라고 北韓代表는 말한다. 즉 各國은 自國의 利益과 野望을 充足시킬 수 있는 範圍에서 海洋管轄權을 行使함으로써 主權, 經濟生成, 獨立經濟를 防衛할 수 있다고 力說한다. (9) 오늘날 아시아, 아프리카, 南美의 諸國들은 共同集團의 으로 主權, 領海, 海底資源을 帝國主義國家들의 약탈로부터 防衛하기 위하여 극적으로 鬪爭을 繼續한다고 海洋法과 無關한 政治的 傳統

을 일삼고 있다. (10)

北韓은 200 海里의 領海를 (11) 支持한다고 말한다. 經濟水域도 200 海里로 해야한다고 主張한다. 深海底開發에 대하여서는 新生獨立國들의 見解를 支持하고 있다. 즉 深海底開發은 國際機構에 의하여 管理되어야 하며, 여기서 얻은 利益은 新生獨立國에 配分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北韓은 半島로서 海洋法에 대하여 큰 関心을 가진다고 말하면서 海洋法은 國家獨立問題 (12)를 解決해야 한다고 海洋法の 機能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發言을 하고 있다. 北韓은 海洋資源의 開發, 領海 其他 海洋法分野에 대하여 完全主權을 行使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韓은 住民生計의 向上, 經濟的 富強과 發展을 위하여 沿岸漁業에 積極的으로 參與하고 있다. 또 海底資源의 增進 開發을 위하여 努力하고 있다. 그러나 美帝國主義는 韓國을 占領하고 海洋資源을 擄取하고 있다고 非難한다. (13) 帝國主義의 兩韓 掠奪行爲는 北韓의 立場, 世界平和 특히 人道主義的 國際法에 따라 이 이상 持續되어서는 안된다고 政治的 攻勢를 부리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美國은 兩韓을 繼續 占領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日本의 反動勢力들은 兩韓을 侵略, 不法干涉 掠奪하며 특히 韓半島의 大陸棚을 침식시키고 있다고 日本 (14)까지도 直接的으로 非難하고 있다.

그러므로 南韓은 帝國主義와 植民主義가 海洋独占을 위하여 競争하고 있는 가장 날카로운 곳이라 말한다. 國家의 繁榮과 發展에 貴중한 黃金漁場과 大陸棚은 外國侵略者들에게 무자비하게 掠奪당하고 있다. 이것은 韓國人의 意思와 利益에 反하는 行爲이다. 北韓의 陸上自然資源과 바다를 北韓國民의 利益과 欲望을 위하여 使用하자면 外部勢力의 干涉이 中止되어야 한다고 (15) 이번에는 陸上自然資源의 開發問題까지 들고 나온다. 美帝國主義者들이 南韓에서 撤軍한다면 韓國人은 統一的으로 民主的 方法에 따라 南北韓의 老대한 資源을 開發・利用할 것이다. 오늘날 新生獨立國들의 帝國主義, 植民主義에 의한 掠奪行爲에 대한 鬭爭은 韓國의 平和統一과 獨立을 위한 鬭爭과 같은 性質이라고 말한다. 新生獨立國家는 變함없이 北韓의 鬭爭을 支持해 주기 바란다 라는 政治演說을 海洋法 小委員會에서 恣行하고 있다. (16)

위에서 본 바와같이 北韓은 海洋法과 海洋法會議을 U N 總會의 政治的問題인 것같이 착각하고 利己的인 政治手段으로 惡用하고 있다. 이러한 不實한 態度는 共產主義國家代表者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奇現象이다. 北韓은 이러한 基本立場아래 소위 軍事警戒線을 擁護하기 위하여 1977年 8月 8日 勞動新聞은 (17) 「누구도 말할 權利가 없다」는 要旨를 聲明하였다. 北傀의 軍事警戒線이 宣布되자

大韓民國 美國 日本은 反對意思를 聲明한 바 있다. (18) 이에 대한 北韓의 聲明은 合法的으로 經濟水域內에 軍事警戒線을 宣布한 데 대하여 아무도 合法的으로 干涉할 權利가 없다고 말하였다.

北傀軍司令部는 北韓의 經濟水域內에 軍事警戒線을 宣布하였다. (19) 이러한 措置는 合法的 主權의 行使라고 主張한다. 北韓의 形便上 經濟水域內에서는 北韓의 利益保護, 主權, 軍事的 防衛를 위하여 軍事警戒線을 宣布할 權利가 있다는 主張이다. 分斷된 北韓은 平和와 安全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外勢에 의한 軍事的 侵略을 받을 急迫한 狀況에 있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美國 國務省은 北傀의 軍事警戒線을 承認하지 않는다는 聲明한 것이다. 北韓의 立場은 美國 또는 누구의 承認도 必要없으며 軍事警戒線의 宣布는 一方的으로 行할 수 있는 主權의 行使라고 반박하고 있다. (20)

이상의 分析으로 北韓의 海洋法政策은 海洋法의 一般的 通念과는 아주 거리가 먼 政治的 目的으로 海洋法을 利用하고 있는것이 分明하다. 北韓의 立場은 다음의 두가지로 判斷된다. 첫째, 海洋法史, 海洋法規, 海洋法의 動向 특히 海洋法의 國際的 本質성과 沿岸國의 權利·義務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다는 것을 明白히 하고 있다. 沿岸國은 領海와 內水에 대하여서만 主權을 行使할 수 있

다. (21) 領海 以外의 모든 水域은 公海이다. 接統水域 保存水域 經濟水域 大陸棚, 安全水域, 海洋汚染防止水域 등은 모두가 公海이며 어떠한 國家를 不問하고 여기에 主權을 行使할 수 없는 것이 長期間 確立된 原則, 慣習法이며 實定法規이기도 하다. 다만 公海上 特定水域에 대하여 沿岸國의 特別利益 (22) 을 考慮하여 主權的 權利, 管轄權 등은 認定하고 있으나 어떠한 境遇에도 領海 以外의 水域에서 主權 行使는 現 國際社會에서는 認定되지 않는다. 北傀의 소위 軍事警戒線에도 主權을 認定할 수 없다는 지극히 明白한 問題인데 北韓만이 同線에 主權을 主張하고 있다.

둘째, 北韓의 海洋政策은 16世紀의 낡은 것이다. 海洋이 國防戰略上 重要한 것에 대하여서는 긴 說明이 必要없다고 한다. 그런데 北傀의 소위 軍事警戒線은 海洋戰略의 現代的 感覺과는 훨씬 뒤떨어진 무식의 暴露로 밖에 判斷할 수 없다. 海上 軍事警戒線은 現代 科學戰에 취약이 많아 軍事的 施設을 海底에 옮기는 이른바 海底戰略時代 (23) 에 우리는 살고있다. 그런데 이것 經濟水域을 保護하기 위하여 軍事警戒線을 宣布한 것은 北韓의 判斷 및 施行 錯誤이다.

海上 軍事警戒線은 첫째 軍用 船舶速度의 制限, 둘째 探知機에 依한 적발이 容易하다. 셋째, 船腹의 制限, 넷째, 人員과 機材의 一時 전면 喪失의 危脅, 다섯째, 戰鬪機에 의한 被害, 끝으로 海上

氣象의 不安등의 沮害要因 때문에 海上防衛는 海底로 移動되고 있는 実情이다. 이러한 海上防衛手段의 制限性은 考慮하지 않고 1970年 後半期에 와서 소위 軍事警戒線을 宣布하여 主權, 獨立, 經濟水域을 防衛하기 위하여 主權行使를 하겠다는 北韓의 海洋法政策은 後進性을 여실히 暴露한 것으로 본다.

Ⅲ. 北韓의 領海

北韓의 領海法이 制定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北韓代表는 1976年 亞阿法律諮問委員會 海洋法 小委員會⁽²⁴⁾에서 20 海里的 領海를 主張한다는 異色發言을 하였다. 이러한 北韓의 發言 및 態度와는 關係없이 北韓은 現 國際社會에서 12 海里 以上の 領海를 合法的으로 主張할 수 없다. 同時에 領海內에 無害通航權의 承認은 慣習法 및 實定法規의 規定이다. 여기서는 주로 北韓의 200 海里 領海와 無害通航權에 대한 態度를 分析하기로 한다.

沿岸國은 領海에 대하여 主權을 行使할 수 있다. 단 無害通航은 認定된다. 傳統的으로 領海의 幅에 대하여서는 統一된 바 없었고 3 海里부터 200 海里的 幅이 主張되어 왔다. 200 海里的 領海 範圍를 主張하는 國家는 南美 9 個國⁽²⁵⁾에 不過하다. 第3次 海洋法會議에서 12 海里 說이 多數說이다. 그리고 修正單一交涉案 第二委員會 第2條에는 모든 國家는 12 海里 까지를 領海의 幅으로 定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1977 統合交涉案 第3條에도 같은 規定이 収録되어 있다. ⁽²⁶⁾

第3次 海洋法會議에 參席하고 있는 北韓은 修正單一交涉案이 配布된 後에 200 海里的 領海를 主張하는 것은 理解할 道理가 없다.

이러한 北韓의 不条理한 主張은 하나의 政治的 暴言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고 본다.

大陸棚에 관한 協約 第2條는 沿岸國에 主權的 權利를 賦與하고 있다. (27) 主權이 아닌 主權的 權利를 認定하는 理由는 大陸棚 上部水域에 대한 傳統的인 航海의 自由를 認定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北韓의 經濟水域 宣言은 여기에서도 航海는 北韓의 事前許可를 強要하고 있다. 그러므로 傳統的으로 認定되어 온 領海內에 無害通航權은 通常的 立場에서 認定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北韓은 領海水域의 開發에 關한 事項을 土地法에 規定하고 있다. (28) 北韓土地法 第61條 (29)에 國家는 沿岸 沿海를 開發하고 整理하여 港灣을 새로 建設하고 擴張하며 水路를 開拓하는 등 沿岸 沿海 建設을 推進하며 나라를 富強하게 하고 水上運輸를 發展시킨다. 沿岸·沿海管理機關을 비롯한 該當機關, 企業所 團體는 國土建設 總計劃에 따라 沿岸·沿海 建設을 展望性있게 組織性있게 組織 進行하여 沿岸·沿海 施設物을 正常的으로 補修 整備하며 山기슭을 아름답게 꾸려야 함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第62條, 沿岸·沿海 管理機關과 該當機關, 企業所 團體는 沿岸·沿海의 水産資源을 補充終熄하기 위한 事業을 展望性있게 計劃的으로 組織 運行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30)

上記한 北韓의 領海水域上 開發에 關한 土地法上 規定은 実体法의 規定의 形式要件을 具備하지 못한 一種의 港灣 또는 水産開發 政策과 같은 宣言文 같은 인상이며 北韓의 領海를 本質적으로 研究하는 데 큰 資料가 될 수 없다.

위에서 본 것과 北韓의 領海를 要約하면 첫째, 1976年 亞阿法律諮問委員會 海洋法小委員會에서 200海里의 領海를 主張하는 注目할 만한 發言을 하였다. 그러나 北韓의 領海幅은 일단 12海里로 보아야 할 것이다. 共產主義國家群은 소련을 위시하여 12海里領海를 主張하여 왔다. 1958年 9月 4日 中共·領海 宣言⁽³¹⁾第1項은 領海의 範圍를 12海里로 規定하고 있다. 同 宣言은 外國 船舶의 無害通航權을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軍艦 軍航空機의 通航은 許可制로 宣言하고 있다. 北韓의 領海制度도 中共 것과 거의 같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나하고 생각된다.

IV. 北韓의 經濟水域과 大陸

經濟水域은 沿岸國의 生物과 非生物 海洋資源을 包括적으로 管轄하기 위한것과 漁業을 保護하기 위한 漁業水域의 總體를 뜻하는 것으로 理解된다.

1972年 The Declaration of Santo Domingo의 Modermioal Sea, 1974年 Kenya (32)의 Exclusive Economic Zone 은 前者에 속하고 1973年 India의 Exclusive Fisheries Jurisdiction,(33) 美國·소련 등의 宣言은 後者에 속한다.

北韓의 經濟水域宣言에 施設物設置, 深査開發, 大氣汚染, 人民의 資源 등에 관한 言及이 있으나 同水域은 主로 排他的 漁業水域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海底資源의 深査 및 開發에 관한 規制는 形式的 要件을 具備하지 못하고 있다.

漁業은 北韓의 重要課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漁業은 北韓이 가장 重要視하는 海洋法上의 事項이라고 추정해야 할 것이다.

北韓은 中共과 1959年 8月 23日 漁業協定 (Agreement of Fisheries in the Yellow Sea) 을 締結하였고 (34) 最近 日本과 民間漁業協定을 交渉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大韓民國은 1970年代 初期에는 經濟水域을 反對했다. 現在에도

經濟水域을 積極的으로 찬성하는 것은 決코 아닌 입장을 취하고 있다. 經濟水域의 發端과 더불어 大韓民國의 遠洋漁業 특히 저서 漁業은 致命적 打擊을 받고있다. 다만, 거의 制限化되어가는 經濟水域 (35) 더구나 77 Group 國家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極度로 反對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北韓의 立場은 우리와는 다르다.

1776年 亞阿法行諮問委員會 海洋法小委員會에서 北韓代表는 經濟水域에 對하여 다음의 세가지 事項을 發言하였다. (36)

첫째, 沿岸國은 經濟水域內 生物 및 非生物資源에 對하여 主權的 權利를 가진다.

둘째, 海洋法에 따라 經濟水域의 範圍는 200海里로 해야한다.

셋째, 無沿岸國도 生物資源의 양식을 위하여 經濟水域에 接할 수 있는 可能性이 주어져야 한다고 主張한다, 北韓代表는 上記 3項을 支持하는 說明으로 帝國主義國家들은 經濟水域에 對한 主權을 否認한다고 非難하는 發言을 하는 同時에 帝國主義는 經濟水域內에 漁業資源을 착취하기 위하여 經濟水域에 對한 主權을 同意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은 자가모순이며 非論理的인 非難을 위한 非難에 不拘한 것이다. 北韓은 經濟水域에 對하여 主權的 權利를 主張한다

고 明白히 宣言해 놓고 帝國主義는 主權을 認定하지 않는다고 非難한다. 事實上 西方國家와 北韓은 다 같이 經濟水域에 대한 沿岸國의 權利를 主權的 權利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같은 見解를 놓고 他方의 잘못을 탓하는 것은 興味없는 하나의 拙극이 아닐 수 없다.

위에서 본 것 같이 北韓은 海洋法의 構造的 秩序, 法的地位, 用語 등에 대하여 세련되지 못하고 단, 海洋法의 基礎理論과 實際등을 잘 理解하지 못하고 海洋法을 통하여 北韓의 미숙한 政治의 活動만을 일 삼고 있다. 이러한 無識은 상당히 危險하며 警戒가 必要하다고 본다.

北傀는 200 海里 經濟水域 設定에 관한 中央人民委員會 政令을 採択(1977年6月21日)하였다. 1977年7月1日 發表하고 同政令은 1977年8月1日 부터 實施한다고 報道하였다.⁽³⁷⁾ 經濟水域은 領海의 地上線으로 부터 200 마일로 하고, 設定 困難한 地域은 바다 半分線에 依한다고 하며 同水域內 水中 海底 地下에서 生物 및 非生物에 대한 自主權을 行使한다고 한다. 그리고 北傀 承認없이 外國人, 外國船舶 및 外國航空機들의 同地域에서 고기잡이, 施設物設置, 探查開發大氣汚染등 人民과 資源에 害주는 行爲를 禁止한다고 報道하였다. ⁽³⁸⁾

第3次 海洋法會議에서는 經濟水域에 관한 事項을 심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採択하지 못하고 있다. 經濟水域에 관한 條項에 대하여 合意를 보기도 前에 이미 美·蘇 兩國을 위시하여 日本 등은 성급히 經濟水域을 宣布 實施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그러므로 200海里 經濟水域은 하나의 國際慣行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그러나 第3次 海洋法會議에서 편집한 統合交涉案과 各國의 慣行은 沿岸國의 海洋資源을 經濟的으로 保護하기 위한 法的方法을 審議하고 있다. 經濟水域의 法的地位는 公海說 또는 第3水域說로 認識하고 非沿岸國의 權利를 部分的이나마 認定하며 航海의 自由를 認定하고 있다. 그런데 北韓의 經濟水域은 國際的 慣行과는 달리 軍事的 保護 아래 소위 自主權을 行使한다는 것이다.

經濟水域에 대한 主權의 行使는 오늘날 國際社會에서 그 先例를 찾아 볼 수 없는 唯一한 惡法이다.

經濟水域의 慣行으로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1972年 6月 7日 200海里의 Patrimoneal Sea를 主張한 Santo Domingo 宣言으로 부터 始作된다. 그후 1973年 Kenya의 經濟水域이 宣言되었고 第3次 海洋法會議 交涉案에는 經濟水域에 관한 規定이 收錄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合意에 到達하지 못하고 있다.

修正單一交涉案(第二委員會) 第44條, 統合交涉案 第56條 經濟水

域에 대한 沿岸国은 經濟水域内の 自然資源을 深査開發 管理하는데 主權的權利를 가진다고 規定하고 있다. 人工島嶼, 海上施設의 設立, 使用에 대하여 排他的權利를 가진다. (40) 또한 海水, 潮流, 바람등을 利用하여 에너지의 生産, 科學研究에 대하여는 排他的 權利를 가지며 環境保護, 汚染防止에 관하여 管轄權을 가진다고 規定하고 있다. (41) 그런데 北韓의 소위 政令은 經濟水域 全域에 걸쳐 自主權을 行使한다고 報道하고 있다. 北韓이 主張하는 自主權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明白치 않다. 그러나 經濟水域의 主權行使는 現 國際社會에서 認定될 수 없으며 經濟水域을 提案宣布한 77 Group 主軸國家들도 經濟水域의 法的地位를 主權的權利로 限定·主張하고 있는데, 北韓만이 經濟水域에 主權 또는 소위, 自主權을 主張하고 있다. 北韓은 領海와 經濟水域을 分간하지 못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經濟水域 沿岸国은 權利行使를 함에 있어 非沿岸国의 權利와 義務를 認定하여야 하며 海底 특히 海床, 下層土에 대한 權利行使는 大陸棚에 관한 規定을 따라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北韓 經濟水域은 水中, 海底, 地下를 經濟水域에 예속 시킬뿐만 아니라, 同水域 全域에 걸쳐 自主權을 主張하고 있다. 非沿岸国의 權利는 全적으로 否認하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北韓 經濟水域宣言은 첫째, 沿岸國의 權利를 濫用하고 있다. 經濟水域에 대한 沿岸國의 權利는 主權的 權利, 排他的 權利와 管轄權의 三種으로 細分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全域에 걸쳐 自主權을 主張하고 있다. 이것은 分명한 海洋法의 違反이다. 둘째, 北韓의 經濟水域은 海底資源도 同法에 依하여 權利를 行使하려 하고 있다. 셋째, 非沿岸國의 權利에 대하여 아무런 規定도 두지 않은 것은 他國의 既得權을 無視하는 未完成法이다. 네째 經濟水域을 合法的으로 主張하기 위하여서는 隣接國家와 合意하여 境界를 決定하여야 되는데, 이것은 一方的 宣言으로서 合法性을 欠如하고 있다. 北韓은 이러한 故意的 未備點을 武力으로 保護한다는 口實로 軍事警戒線을 設定한 것은 海洋法上 그 由來를 찾아 볼 수 없는 惡法과 劣等을 兼한 殘惡法이다.

北韓의 大陸棚 探查 및 開發分野는 未發達狀態에 있다. 그러나 大陸棚을 政治的으로 大韓民國의 大陸棚 開發 특히 美國과 日本을 比방하는데 큰 口實을 하고 있다. 大韓民國은 1970年1月1日 隣接 大陸棚에 賦存하는 自然資源中 石油 및 天然가스를 開發, 産業發展에 기여케 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海底資源開發法을 制定·公布하고 同年 5月30日 同施行令을 公布하여 開發地域으로서 7個 海底鉞區를 指定하였다. (42) 이에 앞서 大韓民國은 西海大陸棚을 探

査하기 위하여 第2, 第4 鉞区는 걸프社 第3 및 第6 鉞区는 셀社,
第1 및 第5 鉞区는 칼텍스社, 第7 鉞区는 원덜 필립스社와 祖鉞契約
을 締結하였다. 그리고 日本과는 大陸棚協定⁽⁴³⁾을 締結하고 兩國
政府는 同協定을 이미 批准하였다. 이러한 大韓民國의 積極的인
大陸棚開發政策에 대하여 北韓은 衝擊을 받았다. 이에 처한 非難도
대단하다.

北韓은 大陸棚制度에 대하여 다음 5 個事項을 Kuala Lumpur 會議
에서 發言하였다. (44)

첫째, 沿岸國은 地質學的 條件에 따라 領海와 經濟水域의 自然的
延長說을 따라 合理的인 大陸棚의 範圍를 決定할 수 있다. 이것
은 自然的 延長說을 支持하는 뜻으로 解釋되나 大陸棚의 起算點을
領海 또는 經濟水域에 두고 있다. 自然的 延長說은 領土 즉 大
陸 地殼의 延長을 뜻하는 것이 地質學者들의 通說이다. 그러나
北韓은 自然的 延長을 領海 또는 經濟水域의 延長이라고 한다.
이러한 主張은 大陸棚構造를 잘못알고 하는 말이 틀림없다. 大陸
棚의 自然的 延長說은 經濟水域으로 부터 起算한다면 그 範圍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北韓은 大陸棚制度에 있어 自然的 延長說은
領海와 經濟水域을 測定하는 起算點으로 開始된다는 뜻을 잘못 表現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沿岸國은 大陸棚에 대하여 主權의 權利를 가진다고 聲明하였다. 여기에 別 問題가 없다. 다만 北韓은 沿岸國 權利의 法的 地位를 主權, 排他的主權, 完全主權, 主權의 權利등의 用語를 區別없이 無秩序하게 使用하고 있는 點은 注視하여야 한다. 多幸이도 여기서는 大陸棚에 대한 沿岸國의 權利를 主權의 權利라고 말하였다.

세째, 大陸棚上部水域에 대하여서는 傳統的 海洋法의 原則을 따르고 있는것 같다. 즉 船舶과 航空機는 大陸棚上部水域에 通常的 航海를 할 수 있다고 發言하였다. 다만 通航中 沿岸國의 經濟的 活動에 대한 妨害와 大陸棚의 探查開發活動을 禁止할 것을 條件으로 내세우고 있다.

네째, 大陸棚水域에 海底電線, 送油管線을 施設할 때는 關係當事國間의 合意에 依하여야 된다고 한다.

다섯째, 管轄權以遠의 海底資源 探查와 開發은 새로운 大陸棚協約이 採択될때까지 中止되어야 한다는 主張이다.

第3次 海洋法會議에서는 深海資源開發은 第一委員會에서, 大陸棚은 第二委員會에서 別途로 審議하고 있다. 그런데 北韓은 深海底資源 開發에 관한 事項과 大陸棚을 區別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소위 77 Group 의 主張은 深海底資源開發은 國際海底機構인

國際機構에 의하여 探査 및 開發이 企劃 및 實施되어야 하며 어떠한 特定國家에 의하여 開發하려는 企圖를 防止하자는 立場을 취하여 왔다. (45) 北韓도 이러한 추세를 支持하여 온 것이 틀림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大陸棚協約의 成立을 條件으로 하는 北韓의 發言은 深海底와 大陸棚을 혼동한 發言이 틀림없을 것으로 推測된다.

V. 軍事警戒水域

北傀軍 最高司令部는 1977年 8月1日 北傀의 經濟水域을 保護 하고 自主權을 軍事的으로 지키기 위하여 軍事警戒線을 設定 한다고 發言하였다. 그 適用範圍는 東海에 50海里, 西海는 經濟水域境界線 으로 하고 있다. (46) 그 內容을 보면

(1) 軍事警戒線의 範圍

東海：領海測定線으로 부터 50海里

西海：經濟水域 境界線을 適用

(2) 規制內容：軍事警戒線 区域内 水上, 水中, 空中에서 外國人 外國

軍用艦船, 外國軍用航空機의 行動禁止, 民間船舶 (漁撈船舶除外) 또는 承認下에서만 航行 및 飛行可能

軍事警戒線 区域内 水上, 水中, 空中에서 民間船舶, 民用航空機의 軍事的 目的을 가진 行動과 經濟的 利益을 侵害하는 活動禁止

上記한 소위 北傀 軍事警戒線은 첫째, 經濟水域의 保護, 둘째로 軍事的 目的으로 設定한 것이다. 經濟水域을 保護하기 위하여 軍事警戒線을 宣布한 것은 海洋法史上 前例를 찾아 볼 수 없는

方的 措置이다. 北傀는 軍事警戒線을 合理化하는 口實로서 첫째 安全水域 또는 海上防衛水域을 先例로 보고, 둘째, 一方的 軍事警戒線 宣布를 國際法上 合法的인 行爲라고 主張한다. 여기에서 北韓의 經濟水域, 軍事警戒線 先例로서 引用한 安全水域등을 分析하기로 한다.

北傀는 國際的 先例에 따라 軍事警戒線을 宣布하였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實例를 들지 않고 있다. 筆者의 私見으로서는 中共과 南 美諸國의 主張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中共은 西海에 소위 軍事警戒區域(北緯 37度 20分 - 39度 45分 東經 124度 9分 12초 - 123도 3分) 軍事作戰區域(北緯 27度線 以北)과 軍事航行 禁止區를 設定하고 있다. (47) 그중 軍事航行禁止區域은 그 幅이 좁아서 特別한 問題가 아니다. 軍事警戒區域과 軍事作戰區域도 中共 沿岸 特히 領海의 起算點, 中共沿岸 島로부터 20海里 미만의 거리에 걸쳐있다. 1975年 9月 2日 締結된 日本과 中共人民共和國 (48) 間의 漁業에 관한 協定에서 日本은 同協定 第1條(1)에 定한 軍事警戒區域과 第1條(3) 軍事作戰區域을 認定할 수 없다는 示限을 交換한 바 있다. 中共의 소위 3個 軍事線은 모두가 直線基線을 適用한 線上에서 12海里를 과히 초과하지 않는 位置에 있으나 日本은 소위 軍事線을 認定할 수 없다고 公式 中共에 通告하였다.

中共은 日本의 通告를 接受한 後 協定에 調印하였다. (49)

다음 200 海里 經濟水域은 南美의 産物이라고 할 수 있다. 南美의 海洋法學者는 200 海里說을 理論的으로 合理化 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口實을 내세우고 있다. 즉 Chile와 Peru沿岸의 The Humboldt Current의 範圍를 200 海里를 보는 說, (50) guano birds와 沿岸魚族과의 關係, (51)海水와 陸地와의 關係, (52) 좁은 大陸棚과 大海洋과의 關係 (53) 등을 口實로 200 海里說을 定立시키려고 하고 있다.

MENCHACA는 (54) 1939年 9月 5日 美國 Roosevelt大統領이 宣言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200 海里 Patrol Zone을 先例라고 主張한다. 그런데 이러한 內容이 美國政府 公文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55) 1939年 9月 5日 Roosevelt大統領은 美國의 中立水域을 宣言한 바 있으나 그 範圍는 200 海里가 아니고 美國의 管轄水域을 넘지 않는 幅이었다. (56)

事實上, 南美諸국이 200 海里의 經濟水域을 宣布한 眞實한 動機는 南極의 고래잡이를 独占하기 위한 것이다.

北傀는 中共의 軍事警戒區域, 南美海洋學者들의 主張 特히 1939年 Roosevelt 宣言을 國際的 先例라고 보고있는 것 같은데 兩者는 水域의 範圍나 沿岸國 權能의 性質上 北傀의 軍事警戒線과는

本質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北傀의 先例說은 海洋法上 法的拘束性있는 先例의 原則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北傀의 소위 軍事警戒線은 經濟水域保護와 軍事的 目的을 위한 것이다. 經濟水域을 武力으로 保護하고 北韓의 利益을 위하여 武力行使를 合理化 시키기 위한 北傀의 軍事警戒線은 첫째, 慣習國際法上 認定될 수 없으며 둘째, 海洋法規 또는 現在 進行中에 있는 第3次 海洋法會議 單一交涉案, 修正第一交涉案, 統合交涉案은 勿論이며 軍事的 規定을 찾아 볼 수 없다. (57) 셋째, 北韓의 소위 軍事警戒線은 現代的 意義의 海洋에 軍事利用 方向과는 別個의 時代착오적 行爲이다. 北韓의 소위 軍事警戒線 宣言은 海洋法上 認定될 수 없는 不法宣言에 不過하다. 北韓은 同宣言의 海洋法的 該當性, 合理性, 實効性을 처음부터 期待한 것은 아니며 하나의 政治的 效果를 노린 暴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北傀는 東海의 50海里를 設定함으로써 現在까지 北傀 海·空軍이 實質적으로 警戒活動을 해온 水域에 대한 排他的 防衛圈을 明文化 하고 西海 五島에 대한 軍事的 管轄을 提起할 野望을 表示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東海 大和堆의 우리나라 오징어·꽁치 漁業을 妨害할 可能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73年 10月 23日 이후 北方限界線을 6海里 侵犯해 온 水域을 北傀 軍事活動水域으로

하고 巡威島 南方 40海里를 위시하여 白翎島, 大靑島, 小靑島 부근 및 그 西南海域에 대한 軍事的 管轄을 主張할 素地도 있다. 그리고 同水域은 一般的. 海上防衛水域의 觀念을 떠나 大韓民國만을 意識 警戒 批戰하는 威脅行爲이다.

여기서 소위 北韓의 軍事警戒線을 慣習國際法, 海洋法規 및 第3次 海洋法會議 및 過去 10여년간 發生되고 있는 海洋의 軍事的 意義에 관한 事項을 分析 檢討하여 同宣言의 後進성과 不法성을 지적하려 한다.

北傀 軍事警戒線은 平時國際法 海洋法에서 先例를 찾아 볼 수 없는 平和를 威脅하는 好戰的 侵略行爲이다. 海洋法の 初創期로 부터 금일에 이르기 까지 海洋을 軍事的 目的으로 使用하려는 어떠한 提案도 본 일이 없다. 17, 18世紀 領海의 範圍를 決定하는 方法을 研究하는 가운데 着彈距離說이 가장 適當한 方法과 理論이라는 것이 認定된 것은 歷史的 事實이다. (58) 着彈距離說은 軍事的 用語가 아니며 軍事的 目的을 위하여 創案한 것도 決코 아니다. 다만 領海의 範圍, 특히 漁業水域을 決定하는 最適의 方法으로 承認해 온 것이다. 着彈距離說을 主張한 BYNKERSHOEK이나 그의 後繼者들도 同說을 國防上 또는 軍事的 目的을 위하여 主張하지 않은 點을 明白히 하고 있다. 着彈距離說은 領海漁業의 範圍를 決定하는 規準과 沿岸海 3

海里 以内에서 治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口實로 提唱된 것을 否認하는 學者는 없다. 着彈距離說은 領海의 幅 또는 3海里說과 同義語이다. (59)

慣習法上 軍事的 活動이 可能한 곳은 内水에 不過하다. 自国内 水에서도 軍事的 活動 특히 侵略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이나 活動은 U·N憲章上 國際的 平和를 威脅하는 行爲로서 不法化되고 있다. 또 直線基線을 適用하여 從來 國際海峽으로 使用되어온 水域에 대하여서는 内水라고 하여도 無害通航權이 認定되므로 이러한 内水에서는 軍事的 行爲를 할 수 없는 것이 慣習法이다. 그리하여 海軍 強大國들은 自國의 内水에서나마 軍事施設을 秘密리에 하고 있는데, 公海에 대하여 軍事的 管轄을 主張하는 北傀의 海洋政策은 侵略性을 노출시키고 있는 現代의 감각을 망각한 유치한 行爲이다.

沿岸國은 領海에 대하여 主權을 行使할 수 있다. 그러나, 領海는 領土와는 달리 無害通航을 認定할 義務가 慣習法上으로 長期間 樹立되어 왔다. 이러한 現象을 無害通航權이라 불러 왔다. 自國의 領海内에서도 軍事的 活動을 理由로 無害通航權을 侵犯한다면 이것은 海洋法을 違反하는 行爲이다. 하물며 公海인 經濟水域에서

軍事警戒線을 宣言하고 同水域을 軍事的으로 管轄하려는 北韓의 宣言은 어떠한 口實로서도 合理化 시킬 수 없다.

北韓은 처음으로 第3次 海洋法會議에 參席하였다. 第3次 海洋法會議는 管轄權以遠海底의 平和的使用에 관한 課題를 다루는데 부터 動機가 된 것이다. (60)

이러한 目的으로 出發한 第3次 海洋法 會議는 海洋의 合理的 使用이 根本的 指標이며,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同會議는 難航을 거듭하고 있으나, 海洋의 合理的, 平和的 使用에 대한 根本精神에는 變함이 없다. 그리하여 交涉案의 審議過程이나 各國의 提案, 發言, 主張속에서 軍事的 目的을 意識한 소위 軍事警戒線과 같은 이야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61) 同會議에 直接 參與하고 있는 北韓代表도 소위 軍事警戒線을 提案, 支持를 發言한 記錄은 없다. (62) 이와는 反對로 海洋을 軍事的 目的으로 使用할 可能性을 防止하기 위하여 積極的 態度를 보이고 있는 것이 第3次 海洋法會議의 真相이다. 이러한 海洋法의 現代 潮流를 잘 배웠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軍事警戒線을 宣言하는 行爲는 海洋法思想을 逆行하는 無分別한 行動일 뿐만 아니라 世界的 與論에 지탄을 받을 狂的 行動이다.

海洋과 海軍力과는 密接한 關係가 있다. (63) 強大 海軍國家들은 海洋에 軍事的 施設을 強化하는데 餘念이 없는 實情이다. (64) 그러나

北韓의 軍事警戒線과 같은 時代착오적 無謀한 發言은 現代的 海洋의 軍事化 傾向에 逆行하고 있다. 여기서 過去 10餘年間の 海洋의 軍事的 施設에 관한 現況을 간단히 說明하려 한다.

海洋은 軍事的 作戰 즉, 海軍作戰, 海軍鍊習, 核武器實驗, 로케트 및 미사일實驗, 潛水戰, 核潛水艦의 作戰, 水雷의 施設, 海上封鎖등의 目的으로 強大國에 의하여 使用되었다.(65) 특히 과거 약 10여년 간에 海洋의 地化에 대한 先進國들의 관심이 자못 큰 것으로 본다. (66)

SIPRI 報告에 의하면 過去 10年間 水中作戰의 深度가 增加되고 있다고 한다. 海中作戰의 深度가 增加함에 따라, 이에 適切한 裝備開發研究도 활발하다. 在來式 固定潛水艦探知는 새로운 有人探知機로 代置된다. (67) 水中 技術開發은 強大國의 戰略的 競争을 자극하고 있다. 陸上의 軍事基地 및 施設은 戰時에 쉽게 破壞될 危險性이 있다. 새로운 監視摘發技術 특히 Multiple Warhead Missiles의 正確性은 陸上施設을 危脅하고 있으므로 바다의 戰略化는 피할 수 없다. 즉 陸上軍事施設을 가능한 限 水中, 海底로 移動하여 피해를 防止하려는 것이다. (68) 大陸棚을 이러한 目的으로 이미 使用하고 있는 것은 公開된 秘密이다. 美國은 이미 약 20年前 부터 海底 潛水機探知機를 施設하였다. (69) 北海, Barrents 海

에서는 NATO와 소련側에서 水中電波探知機를 施設하고 있다. (70)

그리고 海底軍事施設에서 潛水艦을 發見, 位置測定, 격진등에 관한

것들은 重要的 海底軍事施設이다. 潛水艦의 探知는 固定 또는 移動式 音響方法에 의한다. 가장 잘 알려진 이러한 種類의 電波探

知機는 "Caesar", "Colassus", (1964) (71) "Sea Sniper" 이다. (72)

美國은 大陸棚 水深 200 m 海底에 Caesar (73) 式 電波探知機를 施設하고 運用은 陸上에 컴퓨터에 의하여 操業된다.

Sea Sniper 式 電波探知機는 太平洋一帶와 하와이에 施設된 것인데

이것은 장거리 探知機이다. (74)

強大國들은 潛水艦探知뿐만 아니라 海底에 永久的 軍事施設을 하여 공격과 방어를 兼한 作戰 및 補給基地로 要塞化하고 있다. (75)

大陸棚 또는 海山에 미사일 基地를 建設하고 있다. 美·蘇, 日本

仏國등의 海軍은 海中 有人作戰調整施設을 建設中에 있다고 한다. (76)

水中居住 즉, Sealabs (77)에 관한 研究調查가 있으며 大陸棚水深

200 M 水中에서 飽化되 潛水를 使用하는 數個의 研究 調查가 進行

中에 있다. 大陸棚以遠 水深 2,000 M 以上 深海底에 대한 關心

은 水中 또는 海底建築이다. 理論上으로는 4,000 ~ 7,000 M 水

深에 水中建築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美海軍은 "Project Seacon" (78) 이라는 海底콘크리트를 칼리포니아 沿

岸에 建築하였다. 그리고 深海의 下層土, 海床을 利用하는 海底建築도 하고 거기에 人間의 住居를 企圖하고 있다.

海底는 軍事的으로 無人水中自動發射機, 原子力水雷, 通信施設, 兵站基地 등으로 現在 利用되고 있다. 潜水技術의 發達로 大陸棚 海底의 軍事的 使用은 現實的으로 可能하다. (79) 大陸棚의 軍事的 施設로서는 潜水艦探知, 潜水艦의 修理, 水雷施設攻擊作戰 등이 있다. 深海底에서는 原子潜水艦作戰의 活動範圍가 넓어지며, 이미 無人機械는 深海底에서 作業中에 있다. (80) 앞으로 強大國의 重要軍事施設 특히 미사일 ASW-Operation (81) 은 水深 2,000-7,000 M로 潜水할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軍事, 經濟, 科學의 發達에 따라 不可避한 것이다. 直接的인 軍事行動을 분간할 수 있는 환경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人間의 水中生活도 不可能한 것 만은 아니다.

國際社會에 있어 海洋의 軍事的 意義는 海洋科學의 發達과 더불어 海中, 海底에 觸점을 돌리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陸上 軍事施設도 고도로 發達된 미사일에 의하여 破壞될 危險性이 있다. 그리하여 이것을 海底에 옮기는데 바쁜 세상에 北韓은 海上에 軍事警戒線을 宣布하는 엉뚱한 일을 恣行하고 있다. 이것은 불가하며, 특히 海洋法에 관한 最新의 경향을 認識하지 못하고 있다.

北韓은 소위 軍事警戒線을 安全水域 (Security Zone) 또는 海上防衛水域 (Sea defense Zone) 과 同一視하며, 특히 安全水域을 先例로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安全水域과 소위 北韓의 軍事警戒線과는 本質的인 차이가 있다. 第一次 海洋法會議 當時 接統水域에 관한 國際法委員會 草案⁽⁸²⁾ 第 66 條를 審議할때, 一部에서는 外國船舶에 의한 安全의 妨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安全水域을 위한 接統水域을 提議한 바 있었으나, 이것은 採択되지 못하였다. 12 海里의 安全水域을 위한 1930 年 하그 (Hague) 법전편찬委員會議의⁽⁸³⁾ 討議資料 第 5 号, 國際法委員會 1956 年 草案 第 66 條도, 採択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安全水域은 海洋法上 認定된 管轄水域이 아니다. 다만 數個國은 12 海里 範圍에서 接統水域의 一種으로 安全水域을 設定한 事例가 있다. 그러나 接統水域을 넘어서 公海上에서 安全水域을 主張한 事例는 없다. 北韓의 소위 軍事警戒線을 1977 年 8 月 8 日 北傀勞動新聞⁽⁸⁴⁾ 이 밝힌 것과 같이 安全水域에 先例를 따랐다고 한다면 이것은 確實히 先例를 誤認한 것이다. 海洋法上 自國의 安全을 口實로 武力을 行使할 수 있는 水域은 없다. 領海內에서도 無害通航權을 妨害하는 行爲는 海洋法 교란행위로 非難하는 此際에 公海上 50 ~ 200 海里의 軍事警戒線을 宣言하고 여기에 自主權 (National Soverignty) 을 行使하겠다는

行動은 北傀를 除外하고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大韓民國⁽⁸⁵⁾을 위시하여 美國과 日本을 소위 軍事警戒線을 承認할 수 없다고 聲明하였다. ⁽⁸⁶⁾北傀는 다시 聲明을 發表하여 「누구 한 사람도 經濟水域內에서 軍事警戒線을 設定한 合法的 措置에 대하여 問題 삼을 수 없다」고 하면서 軍事警戒線의 承認, 非承認을 云云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報道하였다.

즉, 軍事警戒線은 一方的 要式行爲라고 主張한다. 公害를 一方的 宣言에 의하여 軍事的 目的으로 管轄하겠다는 생각은 海洋法史上 그 由來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海洋法의 基本 理念과 國際法의 本質에 違背되는 重大한 과오를 犯하고 있다.

海洋分割의 爭奪戰이 벌어지고 있는 第3次 海洋法會議에서도 一方的 宣言에 依한 소위 軍事警戒線을 주장하는 反海洋法, 反國際法的 發言은 前無, 後無하다. ⁽⁸⁷⁾오로지 北傀만이 영똥한 主張을 하고 있다.

大韓民國政府는 1977年 8月1日 北傀의 軍事警戒線과 관련하여 休戰體制의 破壞 및 우리 漁民, 船舶의 安全操業과 航行의 威脅등을 들어 北韓의 經濟水域 및 軍事警戒線을 認定치 않을것을 明白히 밝히고 北傀가 이를 据否하여 挑發事態를 惹起할 경우 그 責任이 全的으로 北傀側에 있다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聲明을 發表하였다. ⁽⁸⁸⁾

VI. 結 論

北韓의 海洋法政策을 分析·檢討한 結果 다음과 같이 判斷한다.

첫째, 北韓海洋政策은 比較的 짧은 歷史를 가지고 있으며 大韓民國에 比하여 약 20年 落後되어 있다. 北韓의 海洋法은 아직 未達 狀態에 있다.

둘째, 北韓은 海洋法을 法規範으로 고려하는 것 보다 주로 大韓民國, 美國, 日本을 比방하는 政治的 目的으로 使用하고 있다.

셋째, 北韓은 海洋法規와 海洋法理論을 아직까지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基本的인 海洋法規의 用語를 無分別하게 使用하고 있다. 특히 沿岸國의 權利는 主權 主權의 權利, 排他的 管轄權, 管轄權 등의 用語를 區別하지 않고 一括적으로 自主權이라는 危險한 用語만을 使用하고 있다.

넷째, 北韓의 領海는 12海里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1977年 200海里 領海說을 注視하여야 한다.

다섯째, 北韓은 200海里의 經濟水域에 대하여서도 自主權을 宣言하고 있다. 이것은 現國際社會에서 海洋法 및 國際法에 違反하는 行爲이다.

여섯째, 北韓은 大陸棚政策이 없다. 다만 大陸棚制度를 利用하여

美国, 日本, 大韓民国을 비방하는데 惡用하고 있다.

일곱째, 北傀의 소위 軍事警戒線은 海洋法史上 由來가 없는 一方的 違法行爲이나 이것은 國際的 先例에 따른 것이라고 暴言을 恣行하고 있다.

끝으로 西海 五島의 法的地位에 대하여서는 具體的, 個別的으로 깊이 있는 研究가 있어야 하겠다.

註

- (1) UN DOCUMENT A/CONF. 62/WP.10, 15 July 1977, Preamble.
- (2) 朴鍾声, 大韓民国斗 第3次 海洋法會議 法曹, 1976, Vol.25-3
pp.1-22.
- (3) 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 Verbatim
Record of the Discussion, held in Kuala Lumpur, 1976.
- (4) Ibid. p.73
- (5) Ibid
- (6) Ibid., p.74
- (7) Ibid
- (8) Ibid
- (9) Ibid
- (10) Ibid
- (11) Ibid
- (12) Ibid
- (13) Ibid., p.75
- (14) Ibid
- (15) Ibid

- (16) Ibid., p.76
- (17) 1977年8月8日字 北傀 駐유엔代表部 報道資料
- (18) 1977年8月2日 中央日報
- (19) 北傀事項, Unpublished
- (20) Fout Note 17.
- (21) 朴鍾聲, 海洋國際法, 1963, 法文社, p. 94
- (22) Ibid., p. 145.
- (23) Craven, J. P., Rer Nullius de facto,
The Limit of Technology, Rome Symposium, pp. 520
- (24) A-A Legal C C, Op. Cit., p. 74
- (25) 200海里 領海, Argentina Brazil, Ecuador, Elsalvador,
Panama Peru, Sierra Leone, Somalia 등 9個國
- (26) 朴鍾聲, 12海里說, 法政, Vol. 69, 1976, pp. 97-104.
- (27) 朴鍾聲, 大陸棚制度, 法學, 서울大學校, 1977, pp. 294-320
- (28) 北傀, 200海里 經濟水域 設定, Unpublished, p. 4
- (29) Ibid
- (30) Ibid
- (31) MOF, Selected Document on the Law of the Sea in
Northeast Asia, 1975, Declaration on the China's

Territorial Sea of 4 Sept, 1958, p.117

(32) 外務部, 亜・阿 法律諮問委員会 海洋法 小委員회의 会期間 會議 暫定報告書, 1973, p. 77

(33) Ibid., p. 107

(34) Agreement of Fisheries Between Japa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th Anrokez Efehanges of notes, and Agreed Minites at Tokyo, on 15 August 1975, MOF, OP, Cit., p. 217

(35) 1977年3月 現在 經濟水域 200海里를 宣布한 國家 27個국 이다.

Angola, Bangladesh, Benin, Canada, Chile, Comoros, Coasta Rica
Cuba, Denmark (Plus Greenlend)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rance, Gwatamala, Iceland, India, Ireland,
Meldives, Mexico, Mozambique, Nicaregua, Horway, Pakistan,
Portugal, Senegal, Sri Lanka, United Kingdom, USA, USSP
office of Geogrpher, US, Stet Pepl..
p. 494.

(36) A-A Legal CC., op cit., p. 78

(37) 北傀事項, op. cit., p. 1.

- (38) Ibid
- (39) 朴鍾声, 經濟水域과 公海와의 關係, 法政 Vol.75,1977,
pp. 87-94.
- (40) M F, Informal Composite,Hegatiatry Text,1977,Art,56
p.41
- (41) Ibid
- (42) 朴鍾声, 大陸棚의 範圍와 我国 鉉区의 注的保護, 1976, 大韓國
際法学会, pp. 1-24
- (43) Ibid
- (44) A-A Legal CC, op. cit.,p. 77
- (45) 朴鍾声, 最近 大陸棚制度의 變遷過程에 관한 小考, 大
法學論叢, 1977, Vol11, pp. 77-85
- (46) 北傀資料, op,cit.,p.1
- (47) MOF, Selected Document... op. cit., p. 194
- (48) Ibid
- (49) Ibid
- (50) Garcia Sayan,Nolias Sobre La
Soberania Mariime Del Peru,1955, Gwated in Notes and
Comments, The Origins of 200 Mile offrhore Zones, by
Ann L. Hollick, Exeeuthe Director Ocean Policy Projict,

-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the John
Hopkins University, AJIC, Vol. 71, p. 560
- (51) Lecture delivered by Director of Sovereignty and
Frontiers, Peruvi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t the
CAEM, Lima, April 9, 1970. quoted in Ibid., p. 494
- (52) Ibid
- (53) Ibid
- (54) Historia De LAJ 200 Mille De MAH 1973.
- (55) "defensive sea area," "Dn maritime Control areas" and
"Custom enforcement area" 46 US Naval war College,
International Law Document, 1948-1949, 157-80, 1950,
quated Ibid, p. 495
- (56) Press Conference 579, Sept 15, 1939, in 14 Complete
Presidential Press Conference of E. D. Roosevelt pp.
166-74, 1972. quoted in Ibid.
- (57) 李基, 1977年 8月2日 中央日報 論說
- (58) 朴鍾聲, 海洋法研究, 1977, 領海論
- (59) Ibid
- (60) 朴鍾聲, 第3次 海洋法會議, 檀國大 論文集, Vol. 10 1976,
pp. 195-220

- (61) Ibid
- (62) 會議參席者의 証言, 오윤경 代表
- (63) SIPRI, Report No 7, Prospects for Arms Control in the Ocean, Sept, 1972. p. 7
- (64) Ibid
- (65) Ibid
- (66) Ibid
- (67) Ibid
- (68) Ibid
- (69) McDougal and Burhe, the Public Order of the Ocean, 1962, p. 716
- (70) Szasy, P. C., May the U. S. Build Radar Platform on its Continental Shelf, 40 Cornell Law Quarterly, 1954-55, pp. 110-125
- (71) SIPRI, Monography, Tactical and Strategic Anti-Submarine Warfare, 1974.
- (72) Ibid
- (73) Undersea Technology, Dec. 1971. p. 9
- (74) Ibid ., p. 13

- (75) Ibid
- (76) Brown, E. D., Arms Control in Hydrospace: Legal Aspect, 1971; Luard, E., The Control of Sea-bed, London, 1974, ch. 3; Petrowshi, L. C., Military Use of the Ocean Space and the Continental Shelf, 7 Columbia Journal of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Power at sea, No 122, 1976.
- (77) Undersea Technology, Aug, 1971, p. 13
- (78) Ibid
- (79) UN Document A/AC.135/28, 10 July 1968
- (80) SIPRI, Report No 7. 1972.
- (81) Ibid
- (82) MoF. Selected Documents Prepared for Korean Delegation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1957, p. 368
- (83) Ibid
- (84) 北傀 유엔 대표부 報道資料
- (85) 1977年8月2日 中央白報
- (86) Ibid

(87) Ibid., 李 基教授논단

(88) 外務部, Talking Paper on the Korea's 200 mile economic
Zone and military boundary.

